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746호

2019년 9월 6일 (금)

차 례

규 칙

○ 파주시 규칙 제667호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1

○ 파주시 규칙 제668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 파주시 규칙 제669호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 파주시 규칙 제670호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 61

○ 파주시 규칙 제671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6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9-230호 파주 축현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 69

○ 파주시 고시 제2019-231호 도로명주소 고시 ····· 80

회람									

발 행 : 파 주 시

2019년 제12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9년 9월 6일

파주시 규칙 제 667 호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

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파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지방세의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의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의 대상 건수가 연간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서면세무조사는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성실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3.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및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

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

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시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세무조사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대하는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방법을 준용할 것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방법을 준용할 것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 법 제8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영 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

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① 시장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또는 압수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 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자에게는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 제8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및 행동수칙)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거나, 세무조사 중인 지방세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징 수 과 ☏ 940-4281
입 안 자	징 수 과 장	이 상 례
	세무조사팀장	박 경 순
	담 당 자	김 민 환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식·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명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

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 보고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전까지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제 조 업 (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건 설 업 (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판 매 업 (　)	
(전 화) (팩스)	운 송 업 (　)	
○ 제출일자 : 년 월 일	기 타 (　)	

파주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로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로 5개년 각각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서식 작성시에는 파주시 전체분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과

※ 문의사항 전화: (031) 94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계정별원장 및 보조원장(토지, 건물, 차량, 시설장치, 기계장치, 비품 등 유형고정자산 전부,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차입금, 임대보증금, 임대료수입, 임차보증금, 지급임차료, 이자비용, 수수료, 세금과공과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법인현황

2.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3.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4.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파주시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 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법 인 현 황

	법인명	①법 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 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 (백만원)	②법인 구분	③종류
본 점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업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파주시내사업장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서식 2>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파주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 등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92조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파주시 소재 사업장)

사업년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서식 3>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파주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기타 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파주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①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 계 (ⓑ)					

<서식 4>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파주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2015년까지 : ③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부터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4.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파주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압수·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등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소재지(사업장):

대표자(성 명):

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라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관						
예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인 등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

(단위: 원)

법인명	등록번호	설립·전입일	주 소	사업장	업종	자본금(백만원)	종업원	상장여부	조사일	직전조사일	휴·폐업일	특이사항(연락처)
									추징세액	추징세액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다음과 --.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명령을 받은 지방세 업무담당 공	2. “조사공무원”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

무원을 말한다.	을 말한다.
<신 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 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

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신 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신 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신 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삭 제>

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시장은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관리 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의 대상 건수가 연간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풍토의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	<제6항으로 이동>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③ 일반조사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대상자 또는 전자신고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 이 경우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 경우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직전조사 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최근 5년간 ---- --- ---------- 경우
<신 설>	4.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⑤ 서면세무조사는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풍토의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	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성실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신 설>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각 호

	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대하는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의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 법 제8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영 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4장 세무조사사무의 관리	제4장 세무조사 사무----
<신 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의 착수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

	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 증명서(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의 진행관리) ① 세무조사보고를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
<신 설>	③ 시장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자에게는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 제85조 각 호의 사항이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 규칙안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용어 정비(제2조)

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라.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특정·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제32조)

마.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조사사유, 조사기간 설명 의무 부여(제34조)

바.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책임자의 관리책임 강화(제36조)

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누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제38조)

2019년 제12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9년 9월 6일

파주시 규칙 제 668 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제2호”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지역공동체과 ☏ 940-4523
입 안 자	지역공동체과장	신 동 주
	지 역 경 제 팀 장	강 문 자
	담 당 자	유 미 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7조의3제4항---------- ---------- ----------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 1.·2.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부터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17.3.7.)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규칙 정비(제3조)

○ 인용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변경(제6조)

2019년 제12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9년 9월 6일

파주시 규칙 제 669 호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록・보존해야”를 “기록・보존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누설해서는 안”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요구해야”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편성해야”를 “편성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입금하여 지급해야”를 “입금하여야”로, “현금”을 “지역화폐(신청자에 한함) 또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육청소년과 ☏ 940-5224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우 은 정
	청소년팀장	조 난 희
	담 당 자	최 은 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방법) ① (생 략)	제4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 기록·보존하여야 ---.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주소·성명·성별·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① ----------누설하여서는 아니 ----.
②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와는 별도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요구하여야 ---.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6조(홍보) ----------하여야 ----.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

요예산을 파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한다. ② (생 략)	---------- 편성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입금하여야 ---------- 지역화폐(신청자에 한함) 또는 현금---------.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개정이유

○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변경하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변경(제9조)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지급

○ 허위로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2019년 제12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9년 9월 6일

파주시 규칙 제 670 호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징구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육청소년과 ☏ 940-5224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우 은 정
	청소년팀장	조 난 희
	담 당 자	최 은 진

[별표]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3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판매액이 1만원 미만	· 판매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 판매액이 3만원 이상~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 고용기간이 10일 이상~1개월 미만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 인원이 3명 미만	· 출입 인원이 3명 이상~7명 미만	· 출입 인원이 7명 이상~10명 미만

위 반 행 위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삭제

다. 삭제

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 감경

마. 만 65세 이상 고령자 50% 감경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감경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경

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50% 감경

차.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5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법준수서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5조(법준수서약) ---------- ----------제3조-- ---------- ---------- ---------- ----------받아야----.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2019. 7. 1.시행)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 및 「민법」(2013. 7. 1.시행)의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제5조)

○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별표 공통사항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감경규정 정비(별표 제11호)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의 신설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삭제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용어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삭제에 따른 감경규정 정비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되어 개정사항 반영

2019년 제12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최 종 환 ㊞

2019년 9월 6일

파주시 규칙 제 671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장”을 “파주시장”으로, “회수해야”를 “회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5
입 안 자	환경시설과장	김 관 진
	환경관리팀장	경 형 구
	담 당 자	정 주 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금액·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 략) 2. 지급기준 및 금액: 무단투기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생 략)	**제3조(포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40---------- 3.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용쓰레기봉투 지급 방법)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용쓰레기봉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활동이 종료된 후 남은 수량은 전량 회수해야 한다. 1. ~ 2. (생 략)	**제5조(공공용쓰레기봉투 지급 방법)** 파주시장 ----------회수하여야 --. 1. ~ 2.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자율감시 참여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함 (제3조)

파주시 고시 제2019 - 230호

파주 축현2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파주 축현2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9. 6.

파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파주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15번지 일원

다. 면 적

1) 기정 : 70,670㎡

2) 변경 : 70,912㎡ (증 242㎡)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의 기존공장협소와 OLED의 수요증가에 따른 제조·장비시설 확충 및 제품의 생산성 증대

나. 기 구축된 LCD클러스터 연계강화 도모 및 인근 산업단지와의 효율성·접근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 명 : (주) 야스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1) 기정 :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18.12.31.

2) 변경 :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19.12.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나. 배치계획

업 종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6,801	100.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801	100.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670	증) 242	70,912	100.0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산업시설용지		36,801	-	36,801	51.9	
지원시설용지		1,952	-	1,952	2.7	
공공시설용지	소 계	31,917	증) 242	32,159	45.4	
	도 로	7,653	증) 10	7,663	10.8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주 차 장	857	-	857	1.2	
	소 공 원	3,665	-	3,665	5.2	
	완충녹지	1,973	-	1,973	2.8	
	경관녹지	17,769	증) 232	18,001	25.4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저류시설	(2,500)	-	(2,500)	(3.5)	중복결정

※ 본 산업단지는 단일기업((주)야스) 입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함.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변경)

○ 총괄표

구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계	기정	1	366	7,653	-	-	-	1	366	7,653	-	-	-
	변경	1	366	7,663	-	-	-	1	366	7,663	-	-	-
중로	기정	1	366	7,653	-	-	-	1	366	7,653	-	-	-
	변경	1	366	7,663	-	-	-	1	366	7,663	-	-	-

○ 도로계획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시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중로	2	372	15	국지도로	366	문지리 88-4	축현리 산116-6	일반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2)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㊳①	주차장	축현리 153-16 일원	857	-	857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3) 녹지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	㊷	완충녹지	축현리 산116-6 일원	축현리 산116-6 일원	1,973	-	1,973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변경	㊸	경관녹지	금승리 산79 일원	금승리 산79-2 일원	3,219	-	3,219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변경
변경	㊹	경관녹지	금승리 산79 일원	금승리 산79-2 일원	14,550	증)232	14,782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및 면적 변경

4) 공원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㊷	소공원	금승리 산79일원	금승리 산79-2 일원	1,165	-	1,165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변경
-	㊸	소공원	축현리 153-16 일원	축현리 153-16 일원	2,500	-	2,500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저류시설 중복결정

5)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㊹	저류시설	축현리 153-16 일원	2,500	-	2,500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소공원 중복결정

6)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수요량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생활용수	140.2	증)203.6	343.8	- 오염총량 부하량 산정의 급수량 적용 -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수요량 증가

7)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㊹	저류시설	축현리 153-16 일원	2,500	-	2,500	

8) 오·폐수 처리계획 (변경)

구분	발생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생활오수	123.5	증) 179.3	302.8	- 오염총량 부하량 산정의 오수량 적용 자제오수처리시설 설치후 처리예정 -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발생량 증가

9)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활계 폐기물

구 분	합 계(kg/일)	종량제(kg/일)	음식물(kg/일)	재활용(kg/일)
산업시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334.2	137.0	21.9	175.3
지원시설 생활폐기물	40.5	12.8	17.9	9.8

10)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연료수용량(천Nm³/년)	비 고
합 계	724	-
산 업 시 설	592	실사용량 적용
지 원 시 설	132	원단위 적용

11)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연간전력소요량 (MWh/년)	비 고
합 계	11,706	-
산 업 시 설	11,403	실사용량 적용
지 원 시 설	303	원단위 적용

12)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합 계	717	-
산 업 시 설	715	실사용량 적용
지 원 시 설	2	실사용량 적용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체와 지원기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육성

나. 산업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용지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계획 입지의 관리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별첨)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0,670	증) 242	70,912	100.0	-
공업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56,120	증) 10	56,130	79.2	-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4,550	증) 232	14,782	20.8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	금승리 산79번지 일원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일 반 공 업 지 역	56,120	증)10	56,130	250%이하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및 면적 변경
-	금승리 산79번지 일원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자 연 녹 지 지 역	14,550	증)232	14,782	80%이하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및 면적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①	파주 축현2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15번지 일원	70,670	증) 242	70,91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 경	①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15번지 일원	70,912	○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 증) 242㎡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중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중로	2	372	15	국지도로	366	문지리 88-4	축현리 산116-6	일반도로	-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㊸①	주차장	주차장	축현리 153-16 일원	857	-	857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3)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	㊸②	공 원	소공원	금승리 산79일원	금승리 산79-2일원	1,165	-	1,165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변경
-	㊸③	공 원	소공원	축현리 153-16 일원	축현리 153-16 일원	2,500	-	2,500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유수지㊹중복결정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㊸②	소공원	○ 위치변경 : 금승리 산 79일원 → 금승리 산 79-2일원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변경

(4)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	㊺②	녹 지	완충 녹지	축현리 산116-6 일원	축현리 산116-6 일원	1,973	-	1,973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변경	㊺③	녹 지	경관 녹지	금승리 산 79 일원	금승리 산 79-2 일원	3,219	-	3,219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변경
변경	㊺④	녹 지	경관 녹지	금승리 산 79 일원	금승리 산 79-2 일원	14,550	증) 232	14,782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및 면적변경

■ 녹지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㊸	경관녹지	○ 위치변경 : 금승리 산 79일원 → 금승리 산 79-2일원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변경
㊹	경관녹지	○ 변경 - 면적 : 14,550㎡ → 14,782㎡ (증 232㎡) - 위치 : 금승리 산 79일원 → 금승리 산 79-2일원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변경 및 면적 변경

※ 경관녹지㊹ 내 원형보전지는 경계표시를 의무화하고 원형보전지에 대해 훼손을 불가함.

(5) 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㊿④	유수지	저류시설	축현리 153-16 일원	2,500	-	2,500	파주시고시 제2018-15호 2018.1.17	소공원㊸ 중복결정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변경 사유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후			
-	A1	14,537	-1	금승리 산79번지 일원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14,537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변경	산업시설 용지
-	A2	25,073	-1	축현리 153-15번지 일원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22,264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변경	산업시설 용지
			-2	축현리 산79번지 일원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857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변경	주차장
			-3	축현리 산116-3번지 일원	축현리 산116-3번지 일원	1,952	-	지원시설 용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1	용 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기정) 15m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 (변경) 20m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
		건축선		-

(2) 지원시설용지 (변경)

가구 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A2	-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정) 250% 이하 • (변경) 280% 이하
		높 이		• (기정) 4층 이하, 15m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 (변경) 5층 이하, 20m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
		건축선		-

(3)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A2	-2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주차장외의 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기정) 4층 이하, 15m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 (변경) 4층 이하, 20m이하 (군협의 결과 준수)
		배 치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1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 (기정)산업시설용지 진출입부 외 - 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입구변 산업시설용지 진출입부 외 지역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차량진출입을 허용하여 산업시설용지 내 자유로운 건축계획 및 배치를 유도 • (변경)산업시설용지 진출입부 외 - 차량 진출입을 위한 입구 변경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차량진출입을 허용하여 산업시설용지 내 자유로운 건축계획 및 배치를 유도	
B2 B3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산79-2번지 일원	• 단지 내 도로(곡선구간) - 통행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도로 곡선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차량진출입을 허용하여 산업시설용지 내 자유로운 건축계획 및 배치를 유도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지역발전과(☎ 031-940-53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관계도서 게재생략)

11.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문지리	87-1	답	265.0	82.0	국토교통부	-	-	-	-	
	변경	문지리	87-4	답	82	82	기획재정부	-	-	-	-	
2	기정	금승리	510-3	구	345.0	154.0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변경	금승리	510-6	구	164	164	기획재정부	-	-	-	-	
3		금승리	518-1	전	836.0	836.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4		금승리	518-2	답	539.0	539.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5		금승리	519	답	1,461.0	1,461.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6	기정	금승리	산79	임	43,129.0	41,536.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변경	금승리	산79-2	임	41,768	41,768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7		축현리	153-15	임	9,809.0	9,809.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8		축현리	153-16	임	9,807.0	9,807.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9		축현리	산116-2	임	1,494.0	1,494.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10		축현리	산116-3	임	4,854.0	4,854.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11	기정	축현리	산116-6	임	98.0	98.0	(주)야스(2/4)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이숙희(1/4)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70				
							박상준(1/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30-8 성원포레스타운 111-201	김일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씨동1803호 (잠실동,갤러리아팰리스)	가압류 97,575,071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영업부)	가압류 69,953,567원	
	변경	축현리	산116-6	임	98.0	98.0	(주)야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9				
합 계			기 정		72,637	70,670						
			변 경		70,912	70,912						

나. 지장물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단위	편입수량	소유자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1	금승리	산79	군방호벙커	철근콘크리트 (0.9×2.5×H2.0)	㎡	6.25				
	2			군방호벙커	철근콘크리트 (0.9×2.5×H2.0)	㎡	6.25				
	3			군방호벙커	철근콘크리트 (0.9×2.5×H2.0)	㎡	6.25				
	4			군방호벙커	철근콘크리트 (0.9×2.5×H2.0)	㎡	6.25				
	5		산79	창고	쇠파이프・목조, 천막	㎡	17.3				
	6		산79	비닐하우스	쇠파이프	㎡	79.0				
	7		산79	컨테이너	6.0×3.0	㎡	18.0				
				비닐하우스	쇠파이프・비닐, 그물망	㎡	67.0				
				비닐하우스	쇠파이프・비닐, 그물망	㎡	12.0				
				비닐하우스	쇠파이프・비닐	㎡	60.0				
				차 양	쇠파이프,조립식철판	㎡	35.4				
				차 양	쇠파이프・조립식철재, 보온요	㎡	49.5				
				이동식 화장실	1.0×1.0	㎡	1.0				
				마 당	보도블럭	㎡	20.0				
				세면대	콘크리트	㎡	5.0				
				자가수도	-	식	1				
변경	- 지장물건 보상 및 협의 완료 후 멸실										

다. 분묘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단위	편입수량	소 유 자		권 리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기정	1	축현리	산116-3	분 묘	단 장	기	1				
	2			분 묘	단 장	기	1				
	3			분 묘	단 장	기	1				
변경	- 분묘 보상 및 협의 완료 후 이장 완료										

파주시 고시 제2019-23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6.

파주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646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940-489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